2027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26. 11.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Ⅰ 신청 단체

□ 동포 사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동포(직능)단체

※ **특정 정파의 이념 또는 정책을 옹호·지지·전파하는 성격의 단체 및 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추후 정치적 편향 등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일본 지역**은 재일민단 지원 수요 조사 별도 시행으로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공공외교 中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만 신청** 가능

Ⅱ 신청 사업

□ '27년 1월 1일 ~ '27년 6월 30일 중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 1차 사업 관련, 27년 6월 30일 이후 진행 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모든 결과 보고서는 27년 8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 천재지변, 전쟁, 대규모 전염병 확산 사유가 아닌 단체 사정으로 사업 개최 시기를 1차 사업 진행 시기 내에 개최하지 못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반납 후 2차 사업으로 재신청해야함. 이러한 경우 2차 사업에 선정시 보조비 감액 예정

* '27년 7월 1일 ~ 12월 20일 추진 사업에 대한 2차 수요조사 접수는 4~5월 중 추진 예정 (단, 시기는 내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전통문화용품은 1년('27.1.~'27.12.) 기준으로 신청 필수

ㅇ 아래 중점 사업 우선 지원 예정

중점 사업			지원항목
동포사회 DB구축	ㅇ 동포사회 DB구축 사업		
동포단체 자체 기획 한인의 날	ㅇ 동포단체가 동포 사회 결집 계기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한인의 날' 기념행사	⇨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거주국 공식 제정 한인의 날	ㅇ 거주국 정부 공식 제정 '한인의 날' 등 기념행사 ex) 미주 한인의 날 등	⇨	**공공외교 활동 지원**

□ 사업 신청 시에는 단체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항목에 신청 요망

※ (예)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한인회, 체육회, 여성회, 기타 직능단체 등
차세대 단체 활동 : 이민 2세대 이상 혹은 주로 25세부터 45세까지 동포들로 구성된 단체

지원항목	지원 사업 및 분야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교류증진 분야]** **ㅇ 동포 사회 네트워크 조사 사업** - (지역 동포 단체·인물 간 교류 강화) ▵지역 사회 내 활동 중인 분야별·직능별 동포 단체 및 인물 발굴·조사, ▵지역 내 분야별 동포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 행사 개최 - (동포단체 조직화) 동포단체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한 회원 명부 현행화(실제 활동 인원 중심 회원 정비) 및 단체 내 신·구세대 소통 활성화 및 조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 사업신청서에는 조사 ▵대상(동포 단체, 인물, 단체 회원 등), ▵항목, ▵방법, ▵기간, ▵자료 관리 방안 및 보안 조치 등 내용을 포함 ※ 현지 거주국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유의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후 계획서 제출 **ㅇ (중점 사업) 동포 사회 화합, 소통증진을 위한 '한인의 날' 기념행사** ※ 거주국 현지 정부 공식 제정 '한인의 날' 기념행사는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 - **현지 실정, 한인 이민 역사 등 거주국 특색**을 반영한 **광복절, 추석, 한인의 날(10.5), 한인 주간 등 동포 사회 결집** 행사 ※ 연말 송년회 등 ▵친목성 사업, ▵단순 명절 행사는 제외 **ㅇ 미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신·구세대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사업** - 세대 간 소통 증진, 주류사회 진출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멘토링 사업 ㅇ 동포사회에서 주도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 차세대 동포가 다수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 봉사활동 등 -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취업·경력개발 세미나, 커리어 네트워킹 **[권익신장 분야]** ㅇ 동포 **지위 향상** 사업 - 이민·노동·교육·사회보장 등 거주국 법,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세미나 ㅇ **취약·소외 동포 권익 보호** 사업 - 고려인·조선족·난민·생계곤란 동포 대상 상담·법률 지원, 긴급 지원 - 다문화가정, 청년(학교밖, 실직 등), 여성, 고령 동포 등 권익 보호 프로그램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ㅇ 한인 정체성 강화 및 차세대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ㅇ 거주국 주류사회 대상 한국 전통문화 홍보활동 ㅇ 거주국 주류사회 또는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예술 교류활동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지원	ㅇ 모국어 상실이 큰 국외 지역의 한글신문 발행 등 민족 언어·언론 유지 목적의 사업 ※ 중국, 일본, 러시아·CIS지역 우선 검토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	ㅇ 지역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사업 -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와 연계, 지역별 차세대대회 우선 검토 ※ 25~45세의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차세대 리더(단체장급)들의 모국초청 포럼 ㅇ **차세대 단체가 직접 기획·주도하는 차세대 동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차세대동포가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차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여타 단체(한인회 등)의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사업" 제외 - **차세대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멘토링** 사업 ※ 차세대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 사업 및 분야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지원	**ㅇ 한상 네트워크 권역별 확장 및 강화 사업** - 지역별·현안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 - 차세대 동포 경제인 육성을 위한 사업 **ㅇ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모국과의 협력사업** - 현지 박람회 등 주요경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ㅇ (중점 사업) 거주국 정부 공식 제정 '한인의 날' 등 다수 한인 단체가 결집하는 기념일 행사** ※ 지역 한인회 간 공동 기획·참여 등 협력 사업 우선 지원 **ㅇ (중점 사업) 코리아타운 환경개선 사업** - 거리정비 및 치안개선 사업(가로등, CCTV 설치 사업), 표지판 및 상징물 설치사업 **※ 코리아타운 발전을 위한 주재국 관할 관청과의 공동 협력 사업도 지원 가능** ㅇ 거주국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공외교** 사업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의 문화교류·재능기부·봉사** 사업 ※ △현지 청소년 대상 진로·학업 멘토링, △현지 시민의 관심사를 고려한 세미나(학술·경제 등), △요리·학업·기술 등 재능기부, △취약계층 대상 봉사 및 한식·물품 나눔 행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지속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가점 ㅇ **거주국 정부, 타민족 커뮤니티 등과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ㅇ 한인사회 치안 강화 - 현지 경찰 초청 안전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ㅇ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 한인 정치인(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현지 친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거주국과의 민간 차원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행사 **※ 미국 지역 동포단체는 상기 분야로 지원 불가** '정책 공공외교 활동(정치 연관 활동)'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과 관련해 지원 불가하며. 관련 사업은 공관 주도로 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참고2】 참조**	ㅇ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구심점인 **한인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지원 **※ 정체성 함양을 위한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및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개보수 : 사용 중인 건물 시설 개선, 낙후·노후시설 정비 등 - 증·개축 : 기존 건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증축 및 개축
입양동포 단체지원	**ㅇ 입양동포 단체가 주최하는 사업 지원** - 권익신장(심리정서 지원 포함)을 위한 컨퍼런스, 워크숍, 멘토링 등 행사 - 한인정체성 함양 및 모국 이해 증진 사업 - 시민권(미국) 취득 지원 사업(법률상담 등) ※ 입양동포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입양동포 단체 이외(한인회, 문화예술단체 등)가 시행하는 사업 제외 ※ 모국방문 사업은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 사업(재외동포협력센터)'을 활용

지원항목	지원 사업 및 분야
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 -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 한글학교 연합 연수 ※ 단, 행사장 예약 등을 위해 연초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1. 견적서, 2. 행사일자, 3. 행사장, 4. 규모, 5. 진행계획 등 상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강사파견 ※ 보조금 지원신청서 "강사파견 필요여부"에 강사파견 필요 여부 체크 후 강의 분야, 주제 등 반드시 기재 ※ 파견 강사는 강의 분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선정 후 고지 예정 ※ 지원 불가 사항 : 재외동포청과 **협의 없이 단체가 사전 섭외 후 특정 강사 지정 요청 시 파견 불가**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ㅇ 대륙별, 지역별 **한글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27.1.~'27.6.) **1) 연합회(협의회) 단위의 사업 우선 지원** 2) 한글학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사업** - 한글학교 **재학생 대상 정체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캠프, 각종 대회 등) - **한글학교 다문화 학부모** 맞춤형 교육·소통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등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 ※ 협의회 등이 매년 시행하는 교사연수는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 사업으로 신청 **※ 한글학교 지역별 맞춤형 교재 및 교육 보조자료 개발 사업은 별도 수요조사 실시 예정 (금회는 신청 대상이 아님)**
전통 문화용품 지원 (참고3 참조)	ㅇ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문화예술단체, 한글학교 등)의 **민족문화 유지·전승 활동,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간 교류촉진 활동**(동포단체 행사 및 거주국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 등)에 **필요한 전통문화용품 지원** - 지원품목: 전통악기, 전통의상, 민속놀이 용품 등 *** 붙임 전통문화용품표준사양 참조** **★ 전통문화용품 신청은 반드시 1년('27.1.~'27.12.) 기준으로 신청 필수**

Ⅲ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

□ 지원 규모 :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80%** 이내

ㅇ 사업별 최종 지원 금액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세부 기준 안내 >

○ **총사업비 USD 5,000 이하 → 보조율 80%** 적용(보조:자부담=4:1) / 최대 USD 4,000 보조금 신청 가능
※ 최대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산식 = (총사업비)×0.8

○ **총사업비 USD 5,000 초과 → USD 5,000까지는 보조율 80%** 적용(보조:자부담=4:1)**(동일)**,
USD 5,000을 초과하는 차액에는 자부담률 50% 적용(보조:자부담=1:1)
※ 최대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산식 = 5,000×0.8 + (총사업비-5,000)×0.5 ⇨ (총사업비)×0.5 + 1,500

(예시)

총 사업비	최대 신청(지원) 가능 금액	최소 자부담	보조율
USD 4,000	USD 3,200	USD 800	80%
USD 5,000	USD 4,000	USD 1,000	80%
USD 6,000	USD 4,500	USD 1,500	75%
USD 10,000	USD 6,500	USD 3,500	65%
USD 20,000	USD 11,500	USD 8,500	57%
USD 50,000	USD 26,500	USD 23,500	53%

□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사업 선정

○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중점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사업의 타당성 및 **동포 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단체 **자조 노력**

○ 1개 단체에서 다수 사업 신청 시, 중점 지원 사업 우선 검토
- 1개 단체당 전체 사업 중 최대 5개 사업 신청 가능하며 같은 주제의 사업으로 여러 건 신청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쪼개서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 1개 사업만 선정 검토

○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

⇨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은 **중점 지원 사업 부합 여부, 단체의 자조 노력(예산 조달 능력)**을 우선 고려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계속 사업은 **사업 성과, 결과 보고 충실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이전 사업 결과를 반영, 금년도 사업에서 강조·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매년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국민 등록율**

○ **단체명부 제출 여부 및 회원수**

○ 보조금 증감액 조정 세부 기준(전년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 하기 세부 내용 중 1~3개 이상 해당되는 단체는 감액, 4개 이상 해당되는 단체는 미지원 검토

항 목	내 용	세부내용
전년도 사업 내용 관련	승인 없이 자체 변경	(사후변경) 계획서상 행사일시를 도과한 시점에 사업 변경 신청
		(일정) 기존 계획 대비 60일 초과하는 일정 무단 변경
		(내용) 기존 계획과 무관한 내용으로 무단 변경하여 시행
		(예산) 사업 총예산을 신청 당시 계획 대비 50% 초과 축소
	결과보고서 필수내용 누락	후원명칭 사용, 행사 사진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언론보도, 주요 참석자 명단 미제출	언론 보도 현황, 주요 참석자 명단 등 증빙자료 미제출 ex: 주요 언론보도 10건(언론사 기사 링크 포함), 주요인사 참석 여부(XX 상원의원, OO 시장 등 참석)
보조금 집행 관련	집행 내역의 적절성 여부	지원금 사업 불가 항목 여부
	집행 증빙의 충실성 여부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여부

Ⅳ 지원 불가 사업

□ (공통) 지원 불가 사항

○ 2027.6.30.이후 개최되는 행사

○ 전년도(2026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하기 명시된 기한 내에 미제출(공관 → 동포청 발송 기준)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행사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기한 권고일
2026.1.1.~8.31.	2026.10.31.(금)
2026.9.1.~11.30.	2026.12.20.(일)
2026.12.1.~12.20.	2027.1.10.(일) (2027.1.11(월) 심사 예정) * 27년 사업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27.1.10.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한 단체는 심사시 자동 탈락

***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미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하거나 검증 불가능한 경우,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거하여 선정되더라도 지원금 대폭 감액.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혹은 회수**

○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

○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한 사업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거주국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관할 재외공관에서 공문에 명시 후 제출(인터넷 화면 캡쳐본 등 인터넷 불안정으로 해당 공관을 통해 신청한 근거자료 등)**

*** 사업 신청 단체 담당자 및 회원이 모두 인터넷 활용에 미숙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공관의 지원을 받아 제출할 것**

○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임·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구 분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인건비	- 사업(행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단체 관계자 인건비** 집행 불가
운영비	- **사업(행사)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비, 식비, 간식비** 등 집행 불가 - 수선비,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시설장비 및 차량의 유지비 등 집행 불가 - **장비구입, 시설비, 전신전화, 전산장비, 정보화사업** 등 집행 불가
기타	-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장학금, 시상금 및 기부금(품) 지급 불가 - **기프트카드,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입 및 배포 불가** - **소명되지 않은 여비, 국외출장여비,** 연구개발비, 일반용역비 집행 불가 * 여비는 단체 관계자의 경비로는 지출 불가하며, 초청 대상자의 여비 지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별도 소명해야 함. 단, 연구단체는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용역비 집행 가능

○ 단체 자조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

· 소식지, 주소록·달력 제작 등
· 단체 회원 간 단순 친목 도모 행사 및 연말연시 모임 등
·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 목적의 사업
·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
· 지원 요청액이 USD1,500 미만인 소액사업 등

□ (사업별) 지원 불가 사항

사업명	내 용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 ○ 외교부 및 보훈부 등 타 부처(기관) 및 산하기간(예 :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사업(정책공공외교사업, 국민 공공외교사업, 보훈부 지원 국외 독립기념행사 등)
재외동포	○ 독주(독창) 등 개인 공연

사업명	내 용
문화단체 활동	ㅇ 외교부, 문화원 등 국내외 타 부처(기관)에서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사업(한국주간사업, 수교기념행사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친한외국인 사업 등) ㅇ 단체 연중 사업(연중시행 다수 사업 신청) ㅇ 단순 정기사업(연주회, 전시회, 발표회 등)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 파견	ㅇ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 ㅇ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 사업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ㅇ 개별 한글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일반적 수업 활동 등 * 예시 : 체험학습,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종강식 등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특별활동, 단순 한글학교 개강 오리엔테이션 등 ㅇ 재외동포청 지원금 용도가 전액 상금 집행인 대회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ㅇ 개인 명의(개인소유)로 진행되는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ㅇ 자체 마련 재원이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사업
전통문화용품 지원	ㅇ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 ㅇ 공연·강습 등 용도가 아닌 단순 전시 목적 및 일회성 사업

Ⅴ 기 타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연간 총합 1천만원 이상 지원 단체는 보조금 정보 공시 의무

※ 공시 대상 단체·사업 등은 연말에 일괄 안내 예정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일시, 장소 단순 변경 이외 **사업 예산 및 내용 변경이 있을 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시 **'27년 양식**에 의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기술 필수

ㅇ 천재지변, 전쟁, 쿠데타, 대규모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존 계획 대비 60일을 초과하는 일정 변경은 향후 보조금 감액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양식은 코리안넷 별도 게시

Ⅵ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참고 1】 참조

□ 신청 절차 및 일정 ※ 한국시간 기준

재외동포단체 '26.11.3.(화)~11.23.(월)	➤	재외공관 '26.11.3.(화)~11.27.(금)	➤	재외동포청 '26.11.30.(월)~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공관 의견(우선순위 포함) 작성 후 회신		제출서류 검토(공관의견 포함) 및 심의

※ 유의사항

①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스템 마감으로 추가 신청 및 수정·보완 불가, 반드시 신청서 작성(저장) 후 **11.23.(월) 24:00까지** 제출 완료 요망

②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서 제출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www.korean.net) 활용 제출

<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1. **(회원가입)** www.korean.net 접속 ➜ 개인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재외동포청 승인 (2일 이내 메일 통보)
 ☞ 기 가입단체는 사용 중인 ID/PW 사용
2. **(신청 절차)** 코리안넷 접속 ➜ 단체 ID/PW 로그인 ➜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 사업 ➜ 사업 신청 ➜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저장 및 제출**(제출 기한 내 수정 가능하나,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 상세 내용은 붙임_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단체) 참조

*** 단체 회원 가입 이후 가입 승인까지 통상 2~3일 소요, 수요 조사 마감 4~5일 전에 회원 가입 신청 완료 必**

*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 korean_master@korean.net (평일, 한국시간 09:00~18:00)

□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제출 서류 (온라인 양식 입력)**

온라인 양식에 입력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수지 예산서
	- 단체현황조사서 (코리안넷 가입 정보로 자동 생성, 수정 필요시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붙임파일 첨부하여 제출	- 정관
	- 단체소개서(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 필요시【참고 3】단체소개서 양식 활용
	- 법인(단체) 등록증 ※ 주재국 정부 등록단체인 경우 제출

-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요청 시 제출)

○ (추가) 사업별 제출 서류

사업명	추가 제출 서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공사비 산정 내역서(견적서) ㅇ 현재 보유액 관련 증빙자료(은행 잔고 증명서(필수), 거주국 정부보조금 교부 확인서 등) ㅇ 부족액 조달 계획 관련 증빙서류(기부약정서 등) *** 구두 기부 약정 내용 등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계획은 불인정** ㅇ 인허가 및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인·허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등) *** 단체 명의로 등록된 서류만 가능, 개인 명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 제출 필요** ㅇ 단체 정관 ㅇ 사업 추진 계획서(공정표 등 세부 추진 일정 포함) ㅇ 건물 도면 및 사진(내외부, 주변) 및 대상 건물 시가지도(한인사회 주거지 등)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제출 이후 마이페이지 '사업 신청조회'에서 반드시 **최종 접수 상태를 확인 (임시저장 상태는 제출 미인정)**

ㅇ 다수의 사업은 **각 건별로 신청**

※ 1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건 별로 작성하고 **1개 단체당 최대 5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단, 같은 주제의 사업이거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쪼개서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 1개 사업만 선정 검토

ㅇ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외 **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 동 사업을 통한 '동포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Ⅶ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총괄 캐나다	032-585-3205 / jyahn26@korea.kr
	대양주	032-585-3196 / cskim0029@korea.kr
	유럽	032-585-3201 / ryusn@korea.kr
	중국	032-585-3198 / mhpark0530@korea.kr
	미국	032-585-3197 / jyp9269@korea.kr
	아시아	032-585-3203 / kkmin12@korea.kr
	아중동	032-585-3228 / jsara2@korea.kr
	중남미	032-585-3206 / feliz02@korea.kr
	러시아・CIS	032-585-3228 / jsara2@korea.kr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11 / lsb958@korea.kr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지원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11 / lsb958@korea.kr	
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 (차세대동포정책과)	032-585-3219 / bwv988@korea.kr	
경제단체 활동 지원 (동포경제지원과)	032-585-3225 / hnjeong19@korea.kr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205 / jyahn26@korea.kr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032-585-3229 / kjlee24@korea.kr	
입양동포 단체지원 (차세대동포정책과)	032-585-3216 / swbyun23@korea.kr	
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55 / soyoo2017@korea.kr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8 / psy1226@korea.kr	
전통문화용품 지원 (동포교육문화지원과)	032-585-3208 / psy1226@korea.kr	

참고 1 상세 지원 신청 절차

동포단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http://www.korean.net) 및 제출 ※ 재외공관에 신청서 별도 제출 불요
재외공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공관 의견 작성	공관 의견 및 지원 우선순위 및 심사 확인서 작성
	⇩	
	총괄표 전문 발송 (공관 의견 제출기간 내)	신청 사업 총괄표 및 공관 의견, 지원 우선순위, 2인 이상의 평가자 직위와 이름을 작성하여 동포청으로 전문 발송
재외동포청	심 의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전문 통보 및 지원금 송금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공관별) 지원금 송금
동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60일 이내)	**(재외동포단체)** 1~8월 중 사업 추진한 단체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9~12월 사업 추진 단체는 하단 표기 참고)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관에 제출 ➜ **(공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총괄표'를 재외동포청으로 제출 * 명시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단체는 선정되더라도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차년도 지원 대폭 삭감, 필요시 지원금 환수 조치

행사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기한
2026.1.1.~8.31.	2026.10.31.
2026.9.1.~11.30.	2026.12.20.
2026.12.1.~12.20.	2027.1.10. (2027.1.11(월) 심사 예정) * 27년 사업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27.1.10.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한 단체는 심사시 자동 탈락

참고 2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개인 명의 사업 불가)

○ 재외동포청은 지원 심의 전·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추후 지원 취소 가능

○ 지원금 수령 후 결과 보고 시 건물 임의 처분 방지 조항(**"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을 단체운영 정관에 반드시 반영하여 함께 제출

※ 필요시 정관 개정 요망

○ 지원금은 사업 진척도를 평가, **사업 완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사업 추진 마지막 단계)에 단체에 전달**되므로, 신청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요망

참고 3 단체 소개서

단체(법인) 소개서

단체명	
설립목적	
연혁	*※별첨 가능*
인력현황	○ 대표자 성명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 수 : ** 종사자 수(회원 수,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
임원 현황	*※별첨 가능*
주요사업 및 운영실적	*※별첨 가능*
2027년 주요사업 계획	*※별첨 가능*

참고 4 전통문화용품 표준 사양 (수요 대상 품목)

번호	물품	사이즈	물품사양 및 규격	최대 신청수량
1	사물놀이세트	장구통(약51cm) 사물북(약39cm) 대징(약39cm) 꽹과리(약20cm)	▲장구(1자7치) ▲사물북(1자3치), ▲대징(39cm), ▲꽹과리(20cm) * 각 채 및 가방 포함, 각 항목의 규격 참조	2
2	장구 (1자7치)	장구통(약51cm) 가죽지름(약43.5cm)	▲오동나무(통길이약51cm), ▲1자45치외피소가죽(지름약43.5cm), ▲가죽부전, ▲궁글채(약32cm), ▲열채(약42cm), ▲흰색면줄, ▲철사고리, ▲천가방	5
3	아동용장구 (1자6치)	장구통(약48cm) 가죽지름(약42cm)	▲오동나무(통길이약48cm), ▲1자4치외피소가죽(지름약42cm), ▲가죽부전, ▲채포함(궁채,열채), ▲흰색면줄, ▲철사고리, ▲천가방	5
4	북 (1자3치)	북지름(약39cm) 북채(약33cm)	▲1자3치, ▲외피소가죽(지름약39cm), ▲오동나무, ▲북채, ▲천가방	5
5	아동용북 (1자2치)	북지름(약36cm) 북채(약33cm)	▲1자2치, ▲외피소가죽(지름약36cm), ▲오동나무, ▲북채, ▲천가방	5
6	꽹과리	약 21cm 내외	▲놋쇠, ▲꽹과리채, ▲레자가방	5
7	징	약 38~39cm	▲놋쇠, ▲징채, ▲천가방	5
8	부채춤의상	성인용(S,M,L,XL,XXL), 아동용(8-9,10-11,12-13세)	▲치마, ▲당의(전면/후면자수/금박), ▲속바지, ▲족두리, ▲비녀, ▲재질:공단	5
9	부채춤부채 (2개/ 1세트)	부채살길이약39cm (1자3치)	◦재질:천(꽃그림),카슈칠대나무살,닭털	5
10	사물의상세트 (4벌1세트)	성인용(S,M,L,XL,XXL), 아동용(8-9,10-11,12-13세)	▲민복상·하의, ▲행전, ▲더걸이, ▲삼색띠(실크띠) *남녀미구분	5
11	아동한복세트 (남/여)	6~14세	▲남자한복1(저고리, 바지, 조끼), ▲여자한복1(치마, 저고리, 속치마)	5
12	성인한복세트 (남/여)	S,M,L	▲남자한복1(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 ▲여자한복1(치마, 저고리, 속치마)	5
13	궁중의상세트 (왕/왕비)		▲왕복1(곤룡포,각대,신발(목화),익선관), ▲왕비복1(당의,스란치마,큰머리,떨잠3개)	1
14	혼례복 (신랑/신부)	(신랑)170~175cm(100size) (신부)160~165cm(66size)	▲신랑(관복, 각띠, 사모, 레자목화) ▲신부(치마 저고리, 원삼, 원삼띠, 족두리, 쪽비녀, 앞뒷댕기, 절수건)	1
15	민속놀이세트(소)	-	▲굴렁쇠(3), ▲제기(20), ▲팽이(20), ▲공기(3), ▲윷(2)	5
16	민속놀이세트(대)	-	▲투호(2), ▲활(2), ▲굴렁쇠(2), ▲제기(20), ▲팽이(20), ▲공기(3), ▲윷(2)	2
17	투호세트	화살길이60cmx통높이35cm x통넓이28cm	▲투호통(1), ▲고무화살촉(20) *재질: PVC, 고무	5